

무배당

지킴이 안심보험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지킴이 안심보험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상품의 특이사항

Q : 「무배당 지킴이 안심보험」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 「무배당 지킴이 안심보험」은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장해보장, 재해장해보장,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장, 재해사망보장, 재해골절보장, 5 대골절 수술보장, 깁스 치료보장, 중대한 화상 및 부식보장, 특정 성인질환 입원보장, 특정 성인질환 수술보장, 응급실 내원보장, 식중독 입원보장, 환경성질환 입원보장, 특정 법정감염병 사망보장, 강력범죄보장 중 계약자가 계약체결시 1 개 이상의 보장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선택한 보장’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선택한 보장’이란 계약체결시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장해보장, 재해장해보장,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장, 재해사망보장, 재해골절보장, 5 대골절 수술보장, 깁스 치료보장, 중대한 화상 및 부식보장, 특정 성인질환 입원보장, 특정 성인질환 수술보장, 응급실 내원보장, 식중독 입원보장, 환경성질환 입원보장, 특정 법정감염병 사망보장, 강력범죄보장 중 계약자가 선택한 보장계약을 말함.

Q : 「무배당 지킴이 안심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나요?

A : 「무배당 지킴이 안심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 인당 “최고 5 천만원”이며, 5 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II. 보험가입 자격요건

1. 보험종류

명칭	보장유형
무배당 지킴이 안심보험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장해보장
	재해장해보장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장
	재해사망보장
	재해골절보장
	5 대골절 수술보장
	깁스 치료보장
	중대한 화상 및 부식보장
	특정 성인질환 입원보장
	특정 성인질환 수술보장
	응급실 내원보장
	식중독 입원보장
	환경성질환 입원보장
	특정 법정감염병 사망보장
	강력범죄보장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1년, 2년, 3년 만기	일시납	만 15세 ~ 70세	일시납

3. 가입한도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4. 건강진단 여부

「무배당 지킴이 안심보험」의 경우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III.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1. 상품의 구성

무배당 지킴이 안심보험	(주계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제도성특약)
+ 장애인전용보험 전환특약	(제도성특약)

2.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부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아래의 내용은 보험금 지급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장애’ 보장계약]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장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장애지급률이 3%이상 100%이하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해당 장애지급률

(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재해장해' 보장계약]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 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장해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이상 100%이하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 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 보장계약]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 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000 만원

(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재해사망' 보장계약]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 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000 만원

(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보장계약]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 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골절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상태가 되었을 때	10 만원 (재해골절 1 회당)

(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5대골절 수술' 보장계약]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 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5대골절 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5대골절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만원 (수술 1 회당)

(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깁스(Cast)치료' 보장계약]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 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깁스(Cast) 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10 만원 (깁스치료 1 회당)

(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보장계약]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 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 회에 한함)	1,000 만원

(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특정 성인질환 입원' 보장계약]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 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특정 성인질환 입원비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특정 성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 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다만, 1 회 입원당 120 일 한도)	3 일초과 1 일당 1 만원

(주)

1. '특정 성인질환'이라 함은 '성인질환 1 형'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성인질환 1 형: 뇌혈관질환, 특정심질환, 간질환, 당뇨병, 신부전 등 '약관 별표 7 성인질환 1 형 분류표' 참조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특정 성인질환 수술' 보장계약]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 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특정 성인질환 수술비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특정 성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받았을 때 (수술 1 회당)	수술 1 회당 10 만원

(주)

1. '특정 성인질환'이라 함은 '성인질환 1 형'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성인질환 1 형: 뇌혈관질환, 특정심질환, 간질환, 당뇨병, 신부전 등 '약관 별표 7 성인질환 1 형 분류표' 참조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응급실 내원' 보장계약]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 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응급실내원 진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되었을 때	1 만원 (내원 1 회당)

(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식중독 입원' 보장계약]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 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식중독입원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식중독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4 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다만, 1 회 입원당 120 일 한도)	3 만원 (3 일 초과 1 일당)

(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환경성질환 입원' 보장계약]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 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환경성질환 입원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환경성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 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다만, 1 회 입원당 120 일 한도)	3 만원 (3 일 초과 1 일당)

(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특정 법정감염병' 보장계약]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 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특정 법정감염병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 법정감염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000 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 법정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정의) 제 2 호 및 제 3 호의 질환 중 약관 별표 12 대상이 되는 특정 법정 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환을 보장대상으로 하며 결핵은 제외됩니다.

['강력범죄' 보장계약]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 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강력범죄 위로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1 개월(30 일)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 (다만, 동일사고에 의한 경우 1 회에 한함)	100 만원 (발생 1 회당)

(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금부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세부규정은 약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보험계약의 무효관련 사항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함)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보험계약으로 보나, 위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두렵한 사기의사행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④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내에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IV. 보험료 산출기초

1. 적용이율

Q :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적용이율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지킴이 안심보험」의 적용이율은 연복리 2.5% 입니다.

2. 적용위험률

Q :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무배당 예정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률		무배당 예정 성인질환(1형) 수술률		무배당 예정 특정 법정감염병사망률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 세	0.00004	0.000014	0.00023	0.000287	0.000006	0.000004
40 세	0.00004	0.000014	0.001525	0.000918	0.000006	0.000004
60 세	0.00004	0.000014	0.007762	0.003487	0.000006	0.000004

3.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무엇인가요?

A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V.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지킴이 안심보험」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VI.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 해지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우리 하나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율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써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40 세, 3 년만기, 일시납, 가입금액 100 만원, 모든 보장 선택시, 단위: 원]

경과 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A)	해지환급금(B)	환급률(B/A)	납입보험료(A)	해지환급금(B)	환급률(B/A)
3개월	77,350	49,785	64.36%	56,500	36,348	64.33%
6개월	77,350	45,420	58.72%	56,500	33,135	58.65%
9개월	77,350	41,055	53.08%	56,500	29,923	52.96%
1년	77,350	36,690	47.43%	56,500	26,710	47.27%
2년	77,350	18,670	24.14%	56,500	13,530	23.95%
3년	77,350	0	0.00%	56,500	0	0.00%

(주)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Ⅶ. 보험가격지수

Q : 보험가격지수란 무엇인가요?

A :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평균공시이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기준 : 40 세, 일시납]

상품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장애보장	3	0	86.4%	80.1%	100
재해장애보장	3	0	86.4%	80.3%	100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장	3	0	86.1%	81.5%	100
재해사망보장	3	0	86.5%	80.3%	100
재해골절보장	3	0	86.4%	80.2%	100
5대골절 수술보장	3	0	85.9%	79.7%	100
깁스 치료보장	3	0	86.4%	80.3%	100
중대한 화상 및 부식보장	3	0	86.6%	79.6%	100
특정 성인질환 입원보장	3	0	92.9%	91.1%	100
특정 성인질환 수술보장	3	0	92.7%	92.4%	100
응급실 내원보장	3	0	92.8%	91.1%	100
식중독 입원보장	3	0	89.2%	90.4%	100
환경성질환 입원보장	3	0	92.3%	91.0%	100
특정 법정감염병 사망보장	3	0	95.4%	90.4%	100
강력범죄보장	3	0	86.4%	81.5%	100